

공정위, 제3차 한·미 경쟁정책협의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월 9일(월) 로버트 피토프스키(Robert Pitofsky)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도나 패터슨(Donna Patterson) 법무부(DOJ) 독점금지국 부차관보 등 미국 경쟁당국 대표단들과 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남기(李南基) 부위원장 등 양국의 경쟁정책 당국의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경쟁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동 경쟁정책협의회는 양국의 경쟁당국 책임자가 연례적으로 상호 교환 방문하여 경쟁법 및 경쟁정책 분야의 주요 현안들과 관심사항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과 양국간 협력관계의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장으로서 작년 2월 미국에서 개최된 데 이어 금년으로 3회째를 맞이한 것으로서, 이번 경쟁정책협의회에서는 경쟁정책의 최근 동향, 규제완화 추진동향과 양 경쟁당국의 조사권한·과징 및 절차와 소비자보호시책 및 양국간 국제협력관계 등 경쟁정책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또한 로버트 피토프스키 FTC 위원장은 지난 11월 10일(화) 주한미군 공보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우리 나라의 기업구조조정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사업 맞교환(빅딜)에 대해

미국 독점금지법을 역외적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피토프스키 위원장은 미국의 독점금지법이 적용되는 것은 미국의 소비자에게 영향을 줄 때에만 국한되므로, 빅딜에 대한 영향이 한국 소비자에게만 국한된다면 미국의 독점법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며, 현재까지 한국 5대 그룹의 빅딜이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 등 법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으로 독과점이 발생하더라도 그 효율성이 클 경우 예외를 인정해주는 조항이 있으나, 미국의 경우에는 단위 기업이 업계에서 탁월한 기술이나 선견지명, 효율성 등으로 독점적인 입장을 확보한 경우 효율적인 기업은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독과점이 있더라도 예외를 인정하지만 기업결합을 통해 독점적 위치를 확보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또한 피토프스키 위원장은 부당내부거래 규제 등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정책에 대해 미국의 제안이 완결된 상황은 아니지만 카르텔이나 각종 규제 등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으며, 시장자유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국 공정위의 노고를 높이 평가했다.

토막상식

적극적 예양 (積極的 禮讓, positive comity)

특정한 국가 내에서 경쟁법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다른 국가가 경쟁법 위반사례가 있는 특정국가에 대하여 그 특정국가 운영하는 방법으로 시정을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